

경찰 수사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012년 성폭력 관련 법 개정 이후 수사 실무의 변화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현상 연구, 형사사법제도 연구 등 형사정책 수립에 기초와 근거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는 2012년 12월 이후 성폭력 관련 법률들의 전면적인 개정이 실제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는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며, 귀하의 의견은 향후 형사사법 실무에서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답 내용의 비밀은 절대 보장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진환

문의

연구 책임자: 장다혜 박사
02-3460-5198, dahye20@kic.re.kr

1. 아래의 성폭력 사건 유형 중에서, 지난 한달 동안 귀하께서 가장 많이 다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행위 대상	강간(미수) (준강간 및 유사강간 포함)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및 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
아동 및 장애인	①	④	⑦	⑩_____
청소년	②	⑤	⑧	⑪_____
성인	③	⑥	⑨	⑫_____

2. 현재 귀하가 수사 중인 사건들의 접수 경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피해자의 직접 고소 및 신고
- ② 학교 및 복지시설 등 피해자 이외의 신고 의무기관에 의한 신고
- ③ 위의 ①, ②가 아닌 지나가는 행인, 지인 등 제3자에 의한 신고
- ④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 단체의 연계
- ⑤ 그 밖의 탐문 등을 통한 기획 수사 및 직접 인지

3. 2013년부터 정부는 성폭력을 ‘4대 사회악’ 의 하나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귀하가 수사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 ① 수사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 ② 국민 일반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신고율 증대
- ③ 사법기관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검거 및 처벌 강화 분위기
- ④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절차상 보호, 지원 제도 확대 및 강화
- 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 등 사법기관 외부의 관심 증대

4. 귀하가 속한 경찰서 혹은 수사대(팀)가 위치해 있는 시 혹은 군 단위에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구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이하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5. 귀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나 증거 채취, 긴급 의료 지원 등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건을 처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있다' 고 답하신 분들만 아래에 답하여 주십시오.

5-1. 귀하가 올해 들어 처리한 성폭력 사건 전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되었던 사건의 비율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① 거의 없는 편 ② 10% 이내 ③ 30% 이내 ④ 50% 이내 ⑤ 80% 이내

5-2. 귀하는 접수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조사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 피해자 진술을 참관을 하시는 편입니까?

- ① 단 한번도 참관해 보지 않았다.
② 거의 참관하지 않는 편이다.
③ 대체로 참관하는 편이다.
④ 항상 참관한다.

5-3. 다음 중, 피해자 조사를 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게 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없다.
② 진술분석가 등 진술 전문가들과의 빠른 연계를 통한 수사의 신속성
③ 진술분석가 등 진술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한 피해자의 반복진술 가능성의 감소
④ 수사 참여자들의 전문성과 성폭력 감수성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⑤ 상담, 의료 등 수사 목적 외 피해자 지원의 신속성
⑥ 야간 및 휴일 등 피해자 조사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는 환경

5-4. 다음 중, 피해자 조사를 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게 될 때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없다.
② 상담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의 일정에 따라 조사 일정이 좌우되어 피해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③ 상담가, 진술조력인 등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면서 신속한 수사가 힘들어진다.
④ 피해자가 상담가, 진술조력인, 진술분석가 등 많은 사람과 접촉하여 피해에 대한 반복 진술의 상황에 노출된다.
⑤ 피의자 조사와 분리되어 사건의 실제 판단이 쉽지 않다.

6. 피해자 진술이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처리중인 사건들이 법률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의뢰하지 않음
- ② 통합지원센터까지의 이동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의뢰하지 않음
- ③ 피해자가 신속한 조사를 원해서 거부함
- ④ 피해자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서 거부함
- ⑤ 경찰서 내 여경이 조사를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7.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왼쪽의 문장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출력하여 교부하는 것 이외에도, 지원가능한 제도의 존재에 대하여 구두로 별도로 안내한다.	①	②	③	④	⑤
국선변호사 선임, 가명조서, 진술조력인 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능을 구두로 설명 한다.	①	②	③	④	⑤
신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 없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 또는 안내한다.	①	②	③	④	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성폭력 사건이 접수된 직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 귀하는 이후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경험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이후라도 피해자가 요구할 시에는 상담 및 의료 지원기관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를 계속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나 이에 대한 진술조서를 별도로 받아 수사 기록에 첨부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이미 채취된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증거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는 별도로 보관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증거가 있더라도 분석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환부하거나 폐기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9. 귀하는 형사 합의에 대한 아래의 의견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의를 원하는 피해자는 실제 성폭력 사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 측의 합의종용에 시달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합의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합의는 수사 종결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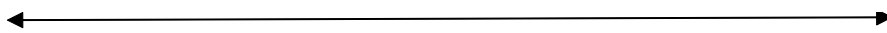
10. 친고죄 폐지와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 강화 이후에,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합의 관행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피의자들은 강한 처벌을 우려하며 합의를 더욱 원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대체로 피의자들은 강한 처벌을 우려하여 합의를 하기 보다는 혐의를 더욱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예전보다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1.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귀하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피의자 혹은 피해자가 합의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합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준다.	①	②
피의자 혹은 피해자가 합의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쌍방의 동의 하에 상호간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①	②
피의자에게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합의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준다.	①	②
피의자가 합의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피의자의 의견을 전달한다.	①	②

12. 귀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설명할 수 있다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모른다

13. 귀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대면 혹은 전화, 서면 등으로 접촉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있다' 고 답하신 분들만 아래 13-1부터 13-3까지 답하여 주십시오.

13-1. 귀하는 다음의 요소들에 있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안된다.	도움이 안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피해자 진술시 동석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피해자가 수사절차상에서 반복된 진술을 해야하는 상황을 최소화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피해자와 수사관 사이의 대화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3-2. 다음 중 사건의 실제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어떠한 점이 가장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피해자 조사시 누락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준다.
- ③ 피해자의 평소 성격, 행실, 현재의 심리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준다.
- ④ 법리 해석 및 적용 법조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여 준다.
- ⑤ 기타 _____

13-3. 현재 활동중인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법리적 측면만 중시할 뿐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수사 담당자를 불신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감시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수사에 대한 성실성과 열의가 넘친다.	①	②	③	④	⑤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인지되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청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하시는 것을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 ② 국선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몰라서
- ③ 사선 변호사에 비하여 불성실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 ④ 수사과정에서 가급적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싶어해서
- ⑤ 새로운 출석 기일을 잡거나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의 번거로움 때문에
- ⑥ 변호사가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
- ⑦ 사건이 커지는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 ⑧ 변호사 등 그 누구의 조력에 대하여도 신뢰하지 못해서

15. 귀하는 수사과정에서 아래의 제도들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들의 전문성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경험 여부		신뢰도				
	없다	있다	매우 불신한다.	불신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신뢰하는 편이다.	매우 신뢰한다.
진술분석전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진술조력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심리평가전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16.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에 대한 가명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 ① 거의 없는 편
- ② 25% 이내
- ③ 25% ~ 50% 이내
- ④ 50% ~ 75% 이내
- ⑤ 75% 이상

17. 가명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뤄지고 있습니까?

- ① 진술조서 상에만 가명을 기재하고 전산상(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는 실명을 입력한다.
- ② 진술조서와 전산상에 모두 가명을 입력한다.
- ③ 진술조서 상에 굳이 가명이 아니더라도 ○○ 등의 표시로 피해자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 ④ 모두 실명으로 작성, 입력한 후, 수사기록의 피해자 성명 부분을 포스트잇 등으로 가리거나 주의사항을 명시한다.

18. 가명조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어차피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거나, 알 수 있는 관계여서
- ②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혀 몰라 서로 알게 될 가능성이 없어서
- ③ 사안이 경미해서
- ④ 피해자의 별다른 요구가 없어서
- ⑤ 업무상 번거로움이 많아져서

19. 성폭력에 대한 형량 강화와 친고죄 폐지 등에 따른 실무상의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귀하는 여기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 않다	그 정도 않은 판다	보통 이다	그 정도 판다	매우 동의 한다
법적 판단이 모호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늘었다.	①	②	③	④	⑤
기존에는 경미하다고 판단되었던 사건들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성폭력에 대한 무고사건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사건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과 상관없는 일률적인 신상정보등록은 피의자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제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친고죄가 폐지되고 법정형이 강화된 만큼, 경미한 사건에 합의가 있더라도 이전보다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종결하십니까?

- ① 참고인증지(피해자) 의견 송치
- ② 내사종결 혹은 미제편철
- ③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송치

21. 대폭적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의 도입 이후 수사 실무상의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귀하는 여기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당하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당한다
많은 피해자 보호제도들을 활용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수사의 신속함이 대체로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많은 피해자 보호제도들로 인해,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반복 진술을 해야하는 부담이 커졌다.	①	②	③	④	⑤
피해자에 대한 수사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주의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피의자의 방어권이 상대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피해자 진술 지원을 위한 유사한 기능들이 중첩되어 비효율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아래의 제도들 중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에 가장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피해자 가명조서 활용
- ②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 ③ 진술조력인 제도
- ④ 심리평가 전문가 제도
- ⑤ 진술분석 전문가 제도

23. 다음 중, 형사사법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피해 사실의 언론 노출 방지 등 피해자의 비밀 보장
- ② 피의자 및 그 주변인들로부터의 합의 강요 및 종용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 ③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 ④ 가해자와의 조사시 대질 금지 및 공간분리
- ⑤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잘못된 성폭력 통념 극복
- ⑥ 현행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활용

24. 귀하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 혹은 처리하는 수사팀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27. 2013년 6월 이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수사 절차 및 규정, 피해자 및 가해자 조사 기법 등 성폭력 교육에
도합 얼마를 참여하셨습니다? 교육과정은 여러 번이었던 경우 합산하여 답해주십시오. 직장교육은 제외합니다.

- ① 별도의 교육에 참여한 적 없음
- ② 2주(240시간, 10일) 이내
- ③ 2주 ~ 4주
- ④ 4주 ~ 8주
- ⑤ 8주 이상

28. 설문자료의 분석을 위해 귀하에 대한 몇 가지 기초적인 정보들을 여쭙겠습니다.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출생연도	_____년생
지역(소속 지방경찰청)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⑰경찰청
수사팀의 소속	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② 경찰서 형사과 ③ 지방경찰청 소속 성폭력전담수사대 ④ 기타
↳ 경찰서인 경우, 소속 경찰서의 규모	① 1급지 경찰서 ② 2급지 경찰서 ③ 3급지 경찰서
경찰입직시기	_____년
현재 계급	① 순경, 경장 ② 경사 ③ 경위 ④ 경감 ⑤ 경정
성폭력 전담 수사관으로 활동한 기간	① 6개월 미만 ② 1년 미만 ③ 1~3년 ④ 3~5년 ⑤ 5년 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